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61호 2020. 11. 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3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 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의 조정
 - 주민복지실 명칭 변경, 직급 조정 및 산림축산과 분리 (안 제3조)
 -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
 - 주민복지실(4급·행정5급·사회복지5급) ⇨ 주민복지과(행정5급·사회복지5급)

-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 (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2)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지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현행화 (별표 1)

나. 정원의 증원

- 정원의 총수 : 686명 ⇨ 733명 / 증 47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22명 / 증 4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4.7%이상	0.5%이내
개정안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5%이내	13.7%이상	0.5%이내
증 감	-	-	-	-	+1%	-1%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686	343	11	104	31	197	
개정안	733	353	11	113	41	215	
증 감	+47	+10	-	+9	+10	+18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46	1	2	3	30	158	190	150	109	3
개정안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증 감	+46	-	-	-	+2	+7	+8	+21	+8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0	-	7	3	30
개정안	41	-	8	3	30
증 감	+1	-	+1	-	-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onero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837, 팩스 : 054-650-608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복지실 명칭 변경, 직급 조정 및 산림축산과 분리 (안 제3조)

○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

○ 주민복지실(4급·행정5급·사회복지5급) ⇨ 주민복지과(행정5급·사회복지5급)

다.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 (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2)

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지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현행화 (별표 1)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입법예고 추진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을 “행정지원실, 주민복지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 축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마목) 중 “축산위생”을 “산림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산과장

가. 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축산환경 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라. 축산위생 및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마.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제9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2조 중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를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두고”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 · 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감사실, <u>주민복지실</u> , <u>행정지원실</u> ,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u>산림축산과</u> ,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제3조(실 · 과의 설치) ① ----- ----- ----- <u>행정지원실, 주민복지과</u> ----- ----- ----- ----- <u>산림녹지과, 축산과</u> ----- ----- -----.
② 실 · 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주민복지실장</u> 가. ~ 차. (생 략)	3. <u>주민복지과장</u> 가. ~ 차. (현행과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환경관리과장 가. ~ 사. (생 략)	8.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상 ·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u>산림축산과장</u> 가. ~ 다. (생 략)	10. <u>산림녹지과장</u>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마. 축산위생 관련 업무

<신 설>

11. ~ 14. (생 략)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
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9.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0. · 11. (생 략)

12. (생 략)

제12조(소장) 체육사업소에 체육
사업소장을 두고,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라. 산림자원 -----

-

11. 축산과장

가. 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
한 사항

나. 축산환경 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관리
에 관한 사항

라. 축산위생 및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마.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
14호까지와 같음)

제9조(소관사무)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0. (현행 제10호 및 제11호
와 같음)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12조(소장) -----

-----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상하수도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두고-----
-----.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관 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13조(소관사무) ----- -----. 1. · 2. (현행과 같음) <u>3. 상하수도사업소장</u> 가. <u>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u> <u>사항</u> 나. <u>상·하수도 관리에 관한</u> <u>사항</u>
--	---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	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일원
보문보건지소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일원
호명보건지소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일원
유천보건지소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일원
용궁보건지소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일원
개포보건지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일원
지보보건지소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일원
풍양보건지소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일원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2,내지1·2,원류리
대제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보건진료소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보건진료소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	울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보건진료소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416	천향1·2,관현1·2,진평1·2리
수계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2,수계1·2,작곡리
독양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2,기곡1·2
송곡보건진료소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보건진료소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월오2리
대은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2,향석1·2,무지리
경진보건진료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2,마산,만화2리
지보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2,도장,도화2리
우망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2,청곡1·2리
청운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2·3,삼강,하풍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체 육 사 업 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상하수도사업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참 고**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시·군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시·군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시·군의 수는 위 표의 시·군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시·군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군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시·군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

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86명 ⇨ 733명 / 증 47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22명 / 증 4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4.7%이상	0.5%이내
개정안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5%이내	13.7%이상	0.5%이내
증 감	-	-	-	-	+1%	-1%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686	343	11	104	31	197	
개정안	733	353	11	113	41	215	
증 감	+47	+10	-	+9	+10	+18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46	1	2	3	30	158	190	150	109	3
개정안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증 감	+46	-	-	-	+2	+7	+8	+21	+8	-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0	-	7	3	30
개정안	41	-	8	3	30
증 감	+1	-	+1	-	-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2,060,076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입법예고 추진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6명”을 “7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5명”을 “72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86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675명</u>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33명</u> ----- ----- --. 1. ----- <u>722명</u> 2.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u>25%이내</u>	<u>13.7%이상</u>	0.5%이내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3%이내	87%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총계	733	353	11	113	41	25	190
정무직 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 계	691	344	11	84	37	25	190
4급	2	1	-	1	-	-	-
4급 내지 5급	3	2	-	-	-	1	-
5급,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 관	32	13	3	2	3	-	11
6급 이하	651	326	8	80	34	24	179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 관)	1	-	-	1	-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 계	-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
연구직 계	8	5	-	-	3	-	-
연구사	8	5	-	-	3	-	-
지도직 계	33	3	-	29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0	3	-	26	1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정원조정 내역 : 733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646	1	2	3	30	158	190	150	109	3
개정안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증 감	+46	-	-	-	+2	+7	+8	+21	+8	-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0	-	7	3	30
개정안	41	-	8	3	30
증 감	+1	-	+1	-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780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	-	-	-	-
세 출 (백만원)	2,060	2,107	2,155	2,204	2,254	10,780
총비용 (백만원)	2,060	2,107	2,155	2,204	2,254	10,780

※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2.3%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2,060	2,107	2,155	2,204	2,254	10,78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060	2,107	2,155	2,204	2,254	10,78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실 지방행정주사 이원길 (054-650-683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2,060,076천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2,060,076	
5급 +2명	7,270천원 × 12월 × 2명 (5급 기본급 평균 6,611천원 / 각종수당 659천원)	+174,480	
6급 +7명	5,504천원 × 12월 × 7명 (6급 기본급 평균 4,062천원 / 각종수당 1,442천원)	+462,336	
7급 +8명	3,967천원 × 12월 × 8명 (7급 기본급 평균 2,792천원 / 각종수당 1,175천원)	+380,832	
8급 +21명	2,982천원 × 12월 × 21명 (8급 기본급 평균 2,018천원 / 각종수당 964천원)	+751,464	
9급 +8명	2,490천원 × 12월 × 8명 (9급 기본급 평균 1,703천원 / 각종수당 787천원)	+239,040	
연구사 +1명	4,327천원 × 12월 × 1명 (연구사 기본급 평균 3,062천원 / 각종수당 1,265천원)	+51,924	

※ 2020년 9월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